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관별로 관리 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383호,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을 제시하고, 보험의 평가·개선 권고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의무보험 총괄관리(안 제83조의3~9, 88조, 88조의2)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 제·개정시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적정보상한도, 가입독려 및 제재(과태료), 피해자 보호조치 등 보험이 갖춰야할 기준의 충족여부를 검토하고, 행정안전부의 의무보험 평가계획에 따라 각 법령을 점검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도 개선계획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제도 개선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청·수입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규정함

나.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치료·보상 지급 기준 마련(안 제72조, 73조)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과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 치료비 지급기준 및 치료절차를 마련함

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6조)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고, 감염병 재난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시행령 별표1의3)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

라.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의3)

매년 증가하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재난안전사업 평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여,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함

마.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규정(안 제26조)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를 의무화하여 계획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바. 징계단계의 적극행정 면책 준용 규정 신설(안 제86조의3)

시행령 제86조의3(적극행정면책의 기준)은 동법 제77조에 따라 징계 요구 단계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나 징계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어 별도의 징계단계 면책 준용 규정 신설이 필요하여 징계 단계에 적용할 적극행정 면책 규정은 징계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0조의3을 제10조의4로 하고,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를 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하 “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5년마다 수립”을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의3제1항제4호”를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부상자”를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체에”를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부상자의”를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으로 한다.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5까지를 각각 제83조의7부터 제83조의9까지로 하고, 제83조의3부터 제8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3(의무보험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 10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②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3조의4(적정수준의 보상한도) 법제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는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

제83조의5(분석·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계획(이하 “분석·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분석·평가 실시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분석·평가계획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분석·평가 실시 연도 2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2.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개정·개선권고 등을 받은 주관기관은 권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4항의 제도개선 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76조

의3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의6(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등) ①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 요청 및 수집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물 확인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 가입대상물별 보험 현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정보
3.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시스템 현황

②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공동이용 또는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명칭
2. 신청 목적 및 이용 기간
3. 신청하는 정보의 내용 및 범위
4. 공동이용 또는 제공된 정보의 관리방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또는 요청 목적의 정당성, 대상 정보의 적정성, 주관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보유·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재난안전의

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보유·이용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의무보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2. 법 제76조의4제4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보유·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3조의7(중전의 제83조의3) 중 “법 제76조제2항”을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83조의8(중전의 제8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에”를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83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2항”을 각각 “법 제76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83조의9(중전의 제8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4항”을 “법 제76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8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책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77조 제4항

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아니할 때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88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
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의4 및 제83조
의6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공
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
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법 제76조제4항”을 “법 제76조의3제1항”으로,
“보험등의 가입관리”를 “재난안전의무보험의 평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회사 및 보험 관
련 단체는 법 제76조제4항”을 “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 등은 법 제76조의3제1항, 법 제76조의4제2
항, 법 제76조의5제4항”으로 한다.

3.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 제102호를 제103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03호(종전의 제102호) 전단 중 “제101호까지”를
“제102호까지”로 한다.

102. 남서울경전철
별표 3의 제목 중 “(제83조의3 관련)”을 “(제83조의7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3. 경찰청장, 소방청장, 문화재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및 <u>해양경찰청장</u> 4. 삭제 5.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6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①-----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해양경찰청장, 질병관리청장</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사전협의를 법 제1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업 관리시스템(이하 “사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제10조의3 (생략)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삭제

④ (생략)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②·③ (생략)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부상자에 대한 치료는 치

다.

제10조의4 (현행 제10조의3과 같음)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

-----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33조의3 제1항제5호-----

-----.

1.·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

료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한다.

④·⑤ (생략)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4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신 설>

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

③ -----
-----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73조(치료 및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
부상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 -----.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의3(의무보험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 제3조 10의2에 따른 재난 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른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②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제1항제2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3조의4(적정수준의 보상한도)
법 제7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적정수준의 보상한도는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

2. 부상의 경우에는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신 설>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
제83조의5(분석·평가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의3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계획(이하 “분석·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분석·평가 실시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법령을 주관하거나 재난안전의무보험의 운용을 주관하는 행정기관 등(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분석·평가계획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영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분석·평가 실시 연도 2월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법 제76조의3제2항에 따른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1. 법 제76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관한 법령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의 충족 여부

2. 법령의 개정권고,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에 대한 개선권고 등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개정·개선권고 등을 받은 주관기관은 권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4항의 제도개선 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의6(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등) ① 법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제공

요청 및 수집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이하 “재난안전
의무보험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대상물 확인과 관리에
필요한 정보, 가입대상물별 보
험 현황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2.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된 정보

3.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련 전산
시스템 현황

② 법 제76조의4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공동
이용 또는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1.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의 명칭

2. 신청 목적 및 이용 기간

3. 신청하는 정보의 내용 및 범
위

4. 공동이용 또는 제공된 정보
의 관리방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 또는 요청 목적의 정당성, 대상 정보의 적정성, 주관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보유·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신청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은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보유·이용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를 신청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1.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재난의무보험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2. 법 제76조의4제4항에 따른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재난안전의무보험정보의 보유·이용을 금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제83조의7(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3조의4(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험등이어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생 략)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 3. (생 략)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의5제2항 -----

-----.

제83조의8(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의5제2항 -----

-----.

1. -----
-- 제83조의4제1항-----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6조의5제2항-----

-----.

1. ~ 3.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76조의5

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83조의5(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 제4항 전단에 따라 허가등을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② (생략)

<신설>

제88조(업무의 위탁) ① ~ ④ (생략)

<신설>

제2항-----

1. 2. (현행과 같음)

제83조의9(보험등의 가입 관리)

① ----- 법 제76조의5제4항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책 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77조 제4항에 따른 징계 등의 책임을 묻지아니할 때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88조(업무의 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법 제76조의4 및 제83조의6에 따른 재난안전의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생략)

2. 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관리에 관한 사무
<신설>

무보험 종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무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 제2항 및 제5항-----

-----.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6조의3제1항--- 재난 안전의무보험의 평가----

3. 법 제76조의4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의

② <u>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u>는 법 제76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u>구축·운영에 관한 사무</u> ② <u>공공기관, 보험사업자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u> 등은 법 제76조의3제1항, 법 제76조의4제2항, 법 제76조의5제4항-----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	
연 락 처	(044) 205 - 4124